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칙

[2024. 07. 18. 개정] [2024. 10. 15. 시행]

전문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예술대학의 위상을 굳게 하기 위하여 회칙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구두로 예술대학의 회칙이 전해져 내려감에 따라 많은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였다. 이에 타 단과대학의 회칙을 참고로 하여 예술대학의 회칙을 개정함으로 타 단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대학 내에서도 회칙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을 이끌어 감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학문탐구를 통하여 회원 개인의 학문적 성장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예술학부의 전반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예술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본회는 예술대학의 민주적 발전상과 단결성을 제시하고 위상을 세우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은 예술대학에 신입학한 자, 예술대학에서 휴학 중인 자, 예술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③ 본회의 회원 중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회원 자격을 인준 받을 수 있다.
- ④ 방학 중에는 수료, 졸업 등에 의한 사유가 아니면 직전 학기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 (학생회의 존속)

학생회장단이 미선출된 때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건설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업무가 정지될 뿐, 본회가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재·보궐선거 포함)를 위해 10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대학학생총회,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 집행국, 각 학과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 (학교운영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위촉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정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에 안건 상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학술 활동 및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회칙에 따른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정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11조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선거권
 2. 본회 의결기구와 학생총투표에서의 의결권
 3. 본회 의결기구에 안건 발의를 위해 연서명할 권리
 4. 총회의 소집 및 학생총투표를 요구할 권리
 5. 학생회비 납부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회장단과 학년대표단, 호선된 비상대책위원장이 휴학 등의 사유로 준회원이 된 경우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권리는 정회원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받는다.
-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본회의 준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수준의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학생회장단 탄핵,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본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결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예술대학학생총회

제12조 (지위) 예술대학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3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 (의장)

① 의장은 총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주재 하며, 의결된 안건을 공포한다.

② 의장은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직을 수행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또는 학생회장이 의장직 수행이 불가능한 여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다음 호와 같은 순으로 임시의장직을 수행한다.

1.부학생회장

2.단위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 1인

3.집행국에서 호선한 1인

④ 의장직이나 임시의장직을 수행할 학생대표자가 없는 경우, 정기총회는 개회되지 아니한다. 임시총회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 중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 및 업무를 가진다.

1.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결

2.예술대학 학생회장단(이하 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의결

3.기타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의결

4.예산안 심의 및 의결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발의

2.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발의

② 총회는 10 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회의 시작 일시

2.회의 장소

3.안건

4.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17조 (개회)

① 총회는 본회 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총회의 안건을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15조 제2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4장 예술대학 학생총투표

제20조 (지위)

예술대학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1조 (투표권)

- ① 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의 정회원에게 있다.
- ② 제11조에 의거하여,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는 투표권을 가진다.

제22조 (시행)

총투표는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 결정에 따라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시행한다.

제23조 (시행 공고)

총투표는 10일 전에 그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투표관리위원회)

- ① 예술대학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이하 총투관위)는 총투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본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총투관위장은 예술대학 학생회장(결위 및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탄핵 안건에 대한 총투표의 경우 제85조의 과정을 따른다.
- ③ 총투관위는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 단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총투관위는 투표일 20일 전에 구성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발의 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 ⑤ 총투관위는 투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5조 (성립·의결요건)

- ①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로 성립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속 학과·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1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투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제26조 (지위)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예학대회)는 총회의 임시 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심의 및 감사기구이다.

제27조 (대의원 구성)

- ① 예학대회는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각 과 학년대표, 산하기구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필요에 따라 1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에 한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8조 (의장) 예학대회의 의장은 회장(궐위 및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예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개정 심의 발의
2. 총회의 소집 요구
3. 회장단 탄핵 발의
4.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
5. 본회 각 집행국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
6. 본회 사업의 검토, 조정, 감사 및 의결
7. 본회 예·결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8. 자치회비 심의, 조정, 감사 및 의결
9. 기타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및 의결
10. 예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0조 (소집)

- ① 예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예학대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예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예학대회 안건은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단, 제29조 3호는 제외된다.

제31조 (개회)

예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32조 (의결)

- ① 예학대회의 의결권은 제27조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
- ② 예학대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

제33조 (지위)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이하 단운)는 본회의 상설 의결 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제34조 (구성)

- ① 단운은 직선으로 선출된 예술대학 학생회장단과 각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집행국장은 단운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하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1,2,3 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 제반 사업을 심의 및 조정

- ②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 및 조정
- ③ 집행국장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④ 예학대회 안건을 심의 및 조정
- ⑤ 그 밖의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

제36조 (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예술대학 학생회장 또는 단운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필요시에 산하기구장이 참여할 수 있다.

제37조 (개회)

단운은 재적 단위 2/3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예술대학 학생회장단은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38조 (의결)

단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제39조 (지위)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예학대회, 단운, 집행국 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엔 부회장이 이를 위임한다.

제40조 (의무)

회장단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진보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 ① 회장단은 본회의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회, 예학대회, 단운, 집행국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회, 예학대회, 단운, 집행국 회의를 소집한다.
- ④ 각 집행국장을 단운에 추천하여 예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⑤ 각 집행국장과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⑥ 예술대학 학생회 예산 담당국에서 편성된 예·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단운의 심의 조정을 거쳐 예학대회에 제출한다.
- ⑦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각 집행국서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⑧ 회장단은 차기 학생회 건설에 힘쓴다.
- ⑨ 회장단은 차기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차기 회장단 임기 시작일 전까지 당해 임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기)

- ①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표 48시간 후부터 차기 선거 종료 이후 48 시간까지로 한다.
- ② 선거 무산이나 후보자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차기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시에는 회장단의 임기를 선거 공고일로부터 40 일 후까지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예술대학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 48시간 후부터 차기 학생회 당선 확정 공표 후 48시간까지로 한다.

제43조 (권한대행)

- ① 회장단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운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예학대학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조 1항에 준한다.
- ③ 권한대행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한다. 제8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8장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44조 (지위)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운을 대체하며 단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45조 (구성)

- ①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성되는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통해 설립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된다.
 1.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회장단이 궐위되었을 때
 3. 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 ② 비대위는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구성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정기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해 학기의 모든 예술대학 학과 학생회의 선거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정기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단운 전원으로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다만, 정기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단운 의원 중 호선된 1인이 차기 단운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해야 하며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때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
- ⑤ 제1,2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 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대위 위원장단 선출과정 (후보자 정보, 투표방식, 투표결과)
 2. 비대위 위원장단 선출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47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대위는 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단운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비대위는 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비대위는 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예술대학 집행국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예술대학 집행국을 구성한다.
- ④ 비대위는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제48조 (임시 집행국)

- ① 예술대학 임시 집행국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집행국원은 단운의 심의를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② 임시 예술대학 집행국은 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임시집행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9장 예술대학 집행국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49조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 ①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술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예학대회, 단운을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집행국을 이끌며 임시집행국 회의를 소집한다.
- ③ 기타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7장 예술대학 학생회장단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51조 (기타)

기타 비대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술대학 단운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9장 예술대학 집행국

제52조 (지위) 예술대학 집행국(이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3조 (구성)

- ① 집행국은 회장단, 각 국의 국장, 국원으로 한다.
- ② 집행국은 회장단이 구성한다.
- ③ 각 국의 국장은 예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예학대회 전까지의 활동은 단운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제54조 (업무 및 권한)

- ① 예학대회 및 단운, 집행국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를 집행한다.
- ② 본회의 운영계획, 예·결산안을 단운 및 예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본회의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④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별 회의를 둘 수 있다.

제55조 (회의)

- ① 집행국은 본회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 ② 매주 정기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각 집행국은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장단 및 집행국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0장 학과 학생회

제56조 (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기구이다.

제57조 (구성)

①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회원 전원으로 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의 회원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제58조 (학과 학생회장단)

① 각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이 된다.

제11장 예술대학 학회

제59조 (목적 및 지위)

예술대학 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예술대학 내의 학술의 연구 및 장려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 예학대학의 인준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제60조 (인준)

① 학회(신규 학회 포함)는 매 학기 초 예학대학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인준 절차는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학회는 본회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학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④ 인준을 받고자 하는 학회장은 집행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회 회원명단

2. 인준신청서

⑤ 집행국은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여 예학대학에서 학회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61조 (지원)

① 집행국은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 학기 예산안에 학회지원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원금 배분은 학회지원금을 신청한 학회장들과 집행국으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회개소위)

③ 학회는 예비대학, 새내기새로배움터 등 본회의 행사에서 홍보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④ 학회장들은 학회를 대표하여 단위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 학회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미인준 학회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62조에 따른 학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2조 (학회 운영세칙)

① 학회 운영세칙은 학회의 인준, 지원, 학회지원금의 배분 등 학회 운영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② 학회 운영세칙은 집행국이 제60조 제1항의 인준절차개시일의 7일 이전에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회 운영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할 수 없으며 회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제12장 예술대학 동아리 및 소모임

제63조 (목적 및 지위)

예술대학 동아리 및 소모임(이하 “동아리 및 소모임”이라 한다)은 예술대학 내의 올바른 대학 문화 창조 및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 예학대학의 인준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제64조 (인준)

- ① 동아리 및 소모임(신규 동아리 및 소모임 포함)은 매 학기 초 예학대학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동아리 및 소모임은 본회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 ④ 인준을 받고자 하는 동아리장 및 소모임장은 집행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준 절차는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에 따른다.
 1. 동아리 및 소모임 회원 명단
 2. 인준신청서
- ⑤ 집행국은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여 예학대학에서 동아리 및 소모임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65조 (지원)

- ① 동아리 및 소모임은 예비대학, 새내기새로배움터 등 본회의 행사에서 홍보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② 동아리장 및 소모임장들은 동아리 및 소모임을 대표하여 단운과 집행국에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비인준 동아리 및 소모임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66조에 따른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

- ①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은 동아리 및 소모임의 인준, 지원, 지원금의 배분 등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 ②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은 집행국이 제64조 제1항의 인준절차개시일의 7일 이전에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동아리 및 소모임 운영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할 수 없으며 회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제13장 재정

제6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본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배분된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본회의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8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제69조 (예산)

- ① 예산은 사무국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단운에서 심의, 조정하여 예학대학에서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결산)

- ① 결산은 사무국에서 하여 예학대회에 제출, 심의를 받는다.
- ② 최종 결산은 15일 이내에 예술대학 링크트리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71조 (거부권)

- ① 예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이의가 있을 시에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단운에 금일간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단운은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금일 간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금일 간에 예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예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한다.

제7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 결산 감사를 위한 본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단운에서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켜 감사 활동에 들어감과 동시에 책임지는 해명서를 제출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맡는다.
- ④ 감사는 발족 후 2주일 이내에 감사활동보고를 학우들에게 공고하며 단운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⑤ 감사결과에 대한 문책은 단운에서 결정한다.

제73조 (세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운에서 정한 재정 집행세척에 의한다.

제14장 선거

제74조 (선거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선거시기)

- ① 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단운에서 정한다.
- ② 선거 실시 마감 기한은 투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6조 (입후보자)

회장단 입후보자는 본회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77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단운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시 기구이다.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 궐위 시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단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국장 중 1인으로 한다.
- ③ 선관위는 부회장과 집행국장 3인과 단위운영위원 3인이 한다.
- ④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8조 (선거운동)

본회의 회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단위운영위원과 집행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9조 (당선)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총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제80조 (당선무효)

다음의 경우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1,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유효득표의 오차표수를 넘지 않을 경우
- 2.오차율이 유효투표수의 3%가 넘을 경우
- 3.위의 사항에 준한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81조 (선거무효)

- ①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화된다.
- ②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는 단운을 소집할 수 있고 단운의 판단에 의해 선거자체를 무효화 처리할 수 있다.

제82조 (재선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83조 (보궐선거)

- ① 회장단 궐위 시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는 제39조에 의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는 탄핵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7조 2항에 의한 권한 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단운에서 심의, 결정한다.
- ④ 보궐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준하여 구성한다.

제84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5장 탄핵

제85조 (탄핵)

- ①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② 회장단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시에는 해당절차에 의거하여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1.학생회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자
 - 2.학생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
 - 3.학생회의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중단한 자
 - 4.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학생회비를 유용한 자
 - 5.기타 학생회 회칙을 위배한 자
- ③ 회장단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의 회칙에 위배된 때에는 다음 중 하나의 서면발의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1.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발의
 - 2.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발의

- ④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예학대회나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단운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3항의 발의안을 심의한다. 이 때 단운의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단운에서 단위 당 한 명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인준을 받는다.
- ⑥ 단운은 탄핵안 발의 10 일 이내에 예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총회 · 예술대학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단위운영위원 중 단운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예학대회 개의 직후 예학대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⑦ 예학대회는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총회 · 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부의 의결 이후 총회 소집, 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예술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⑧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정된다.
 - 1.총회 시 출석회원의 2/3 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2.예술대학 학생총투표 시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⑨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과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은 예술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⑩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16장 회칙 개정

제86조 (발의)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한다.

- 1.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발의
- 2.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발의
- 3.단위운영위원 2/3 이상의 서면발의

제87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회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본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회개소위는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학과 학생회장단 중 최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회개소위는 회칙 개정안을 예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의결)

예학대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9조 (공포)

- ① 회칙이 개정되었을 시 회장단은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실효성을 갖는다.

제90조 (부칙 수정)

부칙은 예학대회에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예학대회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종용)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